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보

http://www.seo.incheon.kr/

선람	기관의장		제1703호 2022. 10. 17.(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2호 2022년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공시(결산)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 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4호 중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7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1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46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3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51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5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70

차 례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59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60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6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10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63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변경) 공고 ——— 1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66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2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67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5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68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69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18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 19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 2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75호 인천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21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79호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 22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80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22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82호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 240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정책담당관 [032-560-4146]**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32호

2022년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공시(결산)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우리 서구의 2021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6,352억원으로, 전년대비 1,60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187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43만원입니다.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8,935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231억원입니다.

◈ 2021년말 기준으로 우리 서구의 채무는 19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35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21년도에 스마트에코시티센터부지(경서동 1051)외 212건(616억원)을 취득하고, 원창동 156-4외 6건(12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조2,677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서구를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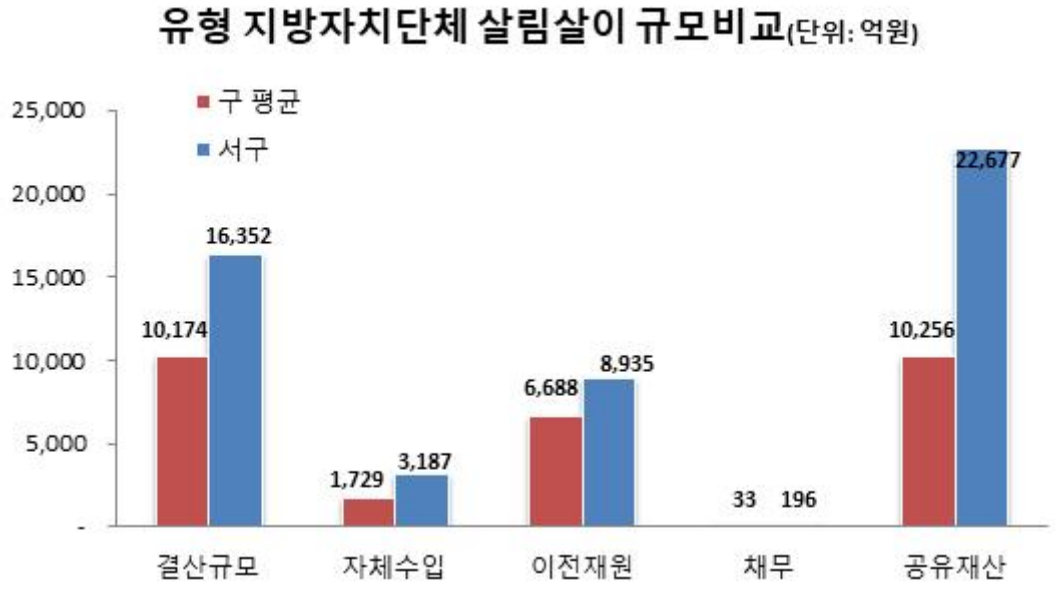

◈ 우리 서구의 2021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조174억원) 보다 6,178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729억원)보다 1,458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688억원)보다 2,247억원 많습니다.

○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3억원)보다 163억원 많고, 구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9천원)보다 26천원 많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조256억원)과 비교하여 1조2,421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서구의 재정은 지속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채무 감축 등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유형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자산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서구는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므로 도로·공원·녹지 등 필수 기반시설의 세출 수요가 높으며, 문화·복지시설 건립 등 신규 시설수요와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main/open_info/finance/local.jsp 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의견수렴 게시판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서구청 기획예산담당관 홍지은(032-560-4055)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인천검단지구 AB19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호반건설 (대표 박철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우면동 호반파크 2관]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9블록
나. 대지면적: 42,977㎡
다. 사업규모: 연면적 144,354.6768㎡
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8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마. 사 업 비: 450,163,654천원

4. **사업기간**: 2022. 12. 31. ~ 2025. 12. 31. (36개월)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끝.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34호

중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1번지 중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개시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종류: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명칭: 중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명: 중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오중석)

나.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칠천왕로33번길 18, 301호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1번지

나. 면적: 3,258.5㎡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미정

나. 준공예정일: 미정

5. 사업대행개시 결정일: 2022년 10월 17일

6. 사업대행자

가. 법인명: 교보자산신탁(주) (대표자 조혁종)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B동 7·8층(서초동, 교보타워)

7. 대행사항

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현금청산 업무 지원

다.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대금 등 자금의 수납, 관리, 운용

라. 준공인가 신청

마. 이전고시

바. 종후 건물(신축건물)의 보존 등기

사. 재산 관리

아. 일반 분양 목적물에 대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 업무(조합원 우선공급 제외)

자. 시공사의 선정 및 변경, 공사도급(승계)계약의 체결 및 변경

차.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공사도급(승계)계약의 체결 및 변경

카. 감리자의 선정 및 변경, 공사도급(승계)계약의 체결 및 변경

타. 협력업체 및 기타 용역업체의 선정 및 변경[선정된 업체와의 (승계) 계약체결 및 변경 포함]

파. 기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위탁자의 정관 및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8. 기타사항

가. 사업대행자는 대행사항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음.

나. 사업대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않은 계약 등 업무는 대행할 수 없음.

다. 사업대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3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49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10.1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2-10-1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49 (당하동, 공공임대아파트)	20200420	'서로 발전하는 도시'에서 착안. 신도시의 남북을 잇는 세번째 도로	공공임대아파트 (검단신도시 AA5블럭)
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218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97번길 33-11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935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295-2 (석남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4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882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297-10 (석남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3-21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94번길 3-9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7-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72번길 13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청라한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0m지점에서 오른쪽	
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7-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72번길 17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청라한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0m지점에서 오른쪽	
8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69-10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372번길 23 (검암동)	20090922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856-1	인천광역시 서구 용해로 23-7 (불로동, 재인포레)	20220530	용해산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재인포레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2-10-17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방축로 333 (가좌동)	건축과-37771(2022.9.13.)호에 의거	20090706	옛 주안염전 방축을 따라 도로가 개설된 데서 연유하여 제명	B동
2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 130-13 (가좌동)	건축과-38551(2022.09.19.)호에 의거	20090922	여우가 자주 다니는 고개라는 뜻의 옛 지명을 반영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3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7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2-47호(2022.04.1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74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

○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57-4번지

○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57-11번지

※ (변경사유)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지번 변경(위치 동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도시계획시설(소로1-174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 사업면적: 6,989.1㎡[금회시행: (기정) 1,523㎡ ⇒ (변경) 1,502㎡ (감21㎡)]

○ 규모: L=695m, B=10m(금회시행: L=152m, B=10m)

※ (변경사유)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주)피에스디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32, 상가동 201, 202, 203호
(불로동, 퀸스타운신명아파트)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실시계획 인가일 ~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당초	석남동	257-4	임	44,768.0	1,522.6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지적 분할 측량 결과 반영
	변경	석남동	257-11	임	1,502.0	1,502.0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8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2023. 1. 1.)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 서구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의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안 제2조 ~ 제5조)

다.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6조)

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안 제7조 ~ 제23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전화 032)560-1914, 팩스 560-2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및 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바람)

※ 우편 발송 의견 제출처

[주 소]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담당관 전략관리팀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2023. 1. 1.)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 서구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의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안 제2조 ~ 제5조)

나.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6조)

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안 제7조 ~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도 첨부”

나. 예산조치: 답례품 공급 등 비용 발생으로 ‘고향사랑기금’ 설치 예정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기타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기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임기는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서구 관할 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서구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10.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서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서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서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서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기타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

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등의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해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담당관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두 차례만 할 수 있고, 중임할 수 없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0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에서 제5조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우선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용 및 제2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운용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④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설치·기금 계좌의 개설이 된 경우에는 기금 계좌로 관리·운용해야 한다.

제3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미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권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846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2.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 전단의 신고표시방법 개선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에 대한 조례개선 권고를 반영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주민협의회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성별균형 참여 명시

3. 주요내용

○ **광고물 중 '전단'의 신고표시방법 개선** (안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 광고물등의 신고대상 중 ‘전단’의 경우 민원인이 관청에 방문하여 신고 후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 표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전단’의 신고 표시 방법 신설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 (안 제8조, 안 제12조)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주민협의회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성별균형참여 반영

○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생략** (안 제24조)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 (안 별표 4)

-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및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발굴 규제개선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기준 및 개별 기준 정비** (안 별표 6)

-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시행령[별표8]을 조례에 반영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도시재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183, 팩스 032-560-274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 전단의 신고표시방법 개선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에 대한 조례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절차규정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주민협의회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성별균형 참여 명시

2. 주요내용

가. 광고물 중 '전단'의 신고표시방법 개선

- 광고물등의 신고대상 중 '전단'의 경우 민원인이 관청에 방문하여 신고 후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 표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전단'의 신고 표시방법 신설 (안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 (안 제8조, 안 제12조)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주민협의회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성별균형참여 반영

다.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생략 (안 제24조)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생략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

라.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 (안 별표 4)

-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및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발굴 규제개선 건의 요구를 반영하여 광고물등 안전 점검 수수료 조정

마.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기준 및 개별 기준 정비 (안 별표 6)

-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시행령[별표8]을 조례에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2021.12.14.공포 및 시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1)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의1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수리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12조제7항제2호 전단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를 “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으로 한다.

별표 4와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의1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건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개정 2022. .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6㎡ 이하	18,000원
	- 면적 6㎡ 초과 20㎡ 이하	26,000원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18,000원
	- 면적 3.5㎡ 초과 10㎡ 이하	26,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27,000원
	- 면적 50㎡ 초과 70㎡ 이하	49,000원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18,000원
	- 면적 10㎡ 초과 20㎡ 이하	26,000원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14,000원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6】 (개정 2022. . .)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질서행위위반규제법」제13조제2항에 따른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로 계산한다.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20천원	30천원	45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30천원	40천원	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40천원	50천원	65천원
라) 30장 초과		50천원	60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3천원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28천원
다)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4) 1년 이상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2. . .)

전단신고필증(제3조제2항 관련)

○ 신고번호 : 신고 수리 시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번호

○ 일련번호 : 신고한 장수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별 번호
(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 날짜 및 신고한 매수는 별도 입력

※ 일련번호 항목은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생 략)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별지 제2호의1서식----------. 다만,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수리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생 략)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⑥ (생 략)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24조(수수료) ①·② (생 략)	제24조(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 수수료----------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전문개정 2011. 3. 29.]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2016. 1. 6., 2020. 6. 9>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 1. 6.>
4. 삭제 <2016. 1. 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1.12.1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라목・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연면적 3㎡ 이하		개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개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개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
나) 연면적 3㎡ 초과		개당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105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135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현수막				
가) 면적 10㎡ 이하		장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장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장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
나) 면적 10㎡ 초과		장당 8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105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135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1만원 이상 6만원 이하	장당 1만3천원 이상 8만원 이하
4)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6천원 이상 6만원 이하	장당 8천원 이상 8만원 이하
나. 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1년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851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합리적 구성 및 공정한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11월 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서구청 제2청사, 10층 자원순환과(심곡동)
- 전 화 : ☎ (032)560-3362, FAX (032)560-2760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합리적 구성 및 공정한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2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4.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

5. 서구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되 중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가 아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시설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⑪ 생략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020. 12. 8.>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

1.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2.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3명 이상 6명 이내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명 이상 7명 이내
      1)「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
      3)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시·도 또는 시·군·구 의회 의원 : 2명 이상 4명 이내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 2명 이상 4명 이내
3.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같은 부지에 둘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8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법」제정(2020.5.1.) 및 일부개정(2021.10.19.)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치기간 도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지역화폐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 제정에 따른 조례목적 근거 법령 인용조문 수정 (안 제1조)

○ 기금의 존치기간 도래에 따른 연장 (안 제16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경제정책과, 전화 560-3261, 팩스 560-27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20.5.1.)」제정에 따라 조례목적 근거법률을 변경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활성화 기금 존치기간 도래(2022년 12월 31일)에 따른 기간연장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정에 따라 조례목적 근거법률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조례 근거 명시(안 제1조)

나. 기금의 존치기간 도래로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2022년도 예산에 38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서구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기금을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서구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서구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역화폐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종이화폐와 전자화폐를 말한다.	1. ----------(이하 “지역화폐”라 한다)----------.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제16조(기금의 존치기간) 기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존치기간) ----- 2026년 12월 31일----------.

관례법령 발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 3. 생략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8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함.(안 제3조)

나.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인상함.(안 제4조)

다. 지급시기를 변경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6층 복지정책과
- 전 화 : ☎ (032)560-4292 FAX (032)560-2738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함.(안 제3조)

나.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인상함.(안 제4조)

다. 지급시기를 변경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2023년 본예산에 4억2천만원 추가 반영되었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서구”를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로, “두고,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을 “두고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8만원 지급. 다만,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지급대상자로 결정된”을 “제3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으로, “지급중단”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른 시·군·구에서 서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10조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 ---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 ----- 두고 거주하는 ------- ---------- ---. ---------- ---------- ---------- ----------.
제4조(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 중 신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5만원 지급 다만,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 ~ 4. (생 략)	제4조(지원사업) ① ---------- ---------- ---------- ---------- ---------- ----------.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8만원 지급. 다만,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시기) ① (생 략)	제7조(지급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 제3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 제8조에 따른 ----------.
<신 설>	③ 다른 시·군·구에서 서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859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함.(안 제11조)
나. 보훈예우수당 금액을 인상함.(안 제11조)
다. 수당 지급 결정 및 시기를 변경함.(안 제13조)
라. 수당지급 중지 사유를 추가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6층 복지정책과
- 전 화 : ☎ (032)560-4292 FAX (032)560-2738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함.(안 제11조)

나. 보훈예우수당 금액을 인상함.(안 제11조)

다. 수당 지급 결정 및 시기를 변경함.(안 제13조)

라. 수당지급 중지 사유를 추가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2023년 본예산에 5억6천만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구““를 ““서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에”를 “서구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회원”을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회원 또는 단체로 한다”를 “사람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5조 중 “구의”를 “서구의”로 한다.

제7조 중 “구의”를 “서구의”로 한다.

제8조제7호 중 “구”를 “서구”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구와”를 “서구와”로, “구 지방공기업”을 “서구 지방공기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을 “따른 지

원 대상자로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니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5만원”을 “8만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른 시・군・구에서 서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14조제1호 중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을 “하거나 또는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급권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5조제1항 본문 중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이나 가족은 수급권자의”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구민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이념) ---------- --- "서구"---------- ---------- ---------- ---------- ---------- ---------- ---------- --------.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 ---------- 서구에 ----------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1. ---------- ---------- ---------- ---------- 사람 -------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2. ---------- ---------- -- 사람 --------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3. ----------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 ---------- 사람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로 한다.	4. ---------- ---------- ---------- 사람 또는 단체
<신 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5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 및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 ---------- ---------- ---------- 서구의 ----------.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구청장은 구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 서구의 ---------- ---------- ---------- ----------.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가 또는 구 주관의 공훈선	7. ---------- 서구 ----------

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제10조(보훈복지)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보훈복지) ----------.
1. 구와 그 소속기관 및 구 지방공기업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	1. 서구와 ---------- 서구 지방공기업----------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1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인천광역시	제11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① ----------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 ----------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니 아니하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당: 매월 5만원 이내	1. -------- 8만원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생 략)	제13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4조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다른 시·군·구에서 서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14조(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4조(수당지급의 중지) ---------- ----------.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1. ---------- 하거나 또는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급권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5조(위로금 신청 등) ① 위로금 신청 시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위로금 신청 등)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이나 가족은 수급권자의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 ⑥ 생략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860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 및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신설(제35조, 제36조)

○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 및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제2조제2항·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의 정비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4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

3.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11월 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별관 2층 재무과
- 전 화 : ☎ (032)560-4161, FAX (032)560-2720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 및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신설(제35조, 제36조)

○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 및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제2조제2항・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의 정비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4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1)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별첨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분임 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 과”를 “담당관·단·과”로 한다.

제5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실·과”를 “담당관·단·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실 ·과”를 “담당관·단·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서당경비”를 “일상경비”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제2호 중 “없는물품”을 “없는 물품”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각기간”을 “매각가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물품운용관의지도감독”을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를 “(물품의 분실·훼손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망실·훼손하였을”을 각각 “분실·훼손하였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망실하였을”을 “분실하였을”으로 한다.

제31조 중 “경질되었을”을 “변경되었을”으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무상대부) 영 제75조제4호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 · 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성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 구분 기준

(1) 비 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①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양 수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차 용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생 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편 입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부 생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양 도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대 여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공유재산편입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매 각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해 체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폐 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분 실	잃어버린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반 납	사용 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관 급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 연 감 모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 리 전 환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분 류 전 환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사 용 전 환	동일물품 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공 차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 상 증 여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기 증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잡 건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이동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①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분임물품출납원----------.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 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담당관·단·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5조(물품의 분류) ----------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② ---------- 따른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 소, 동 및 의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 담당관·단·과------

회사무국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단서 삭제>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실·과, 소, 동 및 의회사무국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 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 담당관·단·과----------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생 략)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 ----------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 ---- ---------- ---------- ---------- ---------- ----------

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14조(물품의 가격) ---------- 따른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불용품의 소요조회) ① (생 략)	제16조의2(불용품의 소요조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6조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물품	2. ---------- 없는 물품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② (생 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 매각가격----------.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이상 물품의 총량	2. 둘 이상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영 제78조 제2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삭 제>
⑤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삭 제>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 ---------- ---------- ---------- ---------- ----------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	제22조(물품의 분실·훼손 보고) ① ----------

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분실·훼손하였을----------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 분실·훼손하였을--------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① ---------- ---------- ---------- ----------.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1. ----- 분실하였을--------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 -------- 변경되었을------- ---------- ---------- ---------.
<신 설>	제35조(무상대부) 영 제75조제4호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대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계산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6. 7. 12., 2018. 12. 18., 2019. 7. 2.>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24.]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9.>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신설 2018. 1. 9.>

③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6. 7. 12., 2018. 1. 9., 2022. 4. 20.>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15. 2. 16., 2018. 1. 9., 2022. 1. 21., 2022. 4. 20.>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2.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3.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불용품: 같은 법 제58조의5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

⑤ 제4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 9.> [전문개정 2009. 4. 24.]

■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4-13>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 (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다. 소모품과 비소모품의 관리

1) 소모품

○ 소모품의 정의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과 같이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소모품의 종류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 단,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의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어 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 (예: 휴대전화기 등)

2) 비소모품

○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

○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 :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86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서구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변경(안 제2조)
나. 인천광역시 서구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3조, 4조)
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안 제6조)
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7조)
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안 제9조 ~ 제1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미래기획단, 전화 032-560-5902, 팩스 032-560-27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나 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바람)

※ 우편 발송 의견 제출처

[주소] (우22725)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미래기획단 전략투자사업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서구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변경(안 제2조)

나. 인천광역시 서구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3조, 4조)

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안 제6조)

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7조)

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안 제9조 ~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도 첨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서구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

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

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

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

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 시민사회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되 중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

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견 제 출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관·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863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변경) 공고

우리 구 관내에 증가하는 대형 창고시설의 건축에 따른 복합적인 생활환경 침해 및 사회적 마찰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목 적

대형 창고시설 건축물이 우리 구의 교통·환경·안전·경관·도시·건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검토하여 복합적인 생활환경 침해 및 사회적 마찰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근 거

가.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8호

다.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 사목

3.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변경)

가. 대형 창고시설의 건축계획 및 입지에 관한 심의(신설)

항 목		내 용	비고
구청장 지정 건축심의 사항	현행	-	**신설**
	변경	**높이 40m 이상 창고시설의 건축계획 및 입지에 관한 심의**	

4. 시 행 일 : 2022. 10. 17.(월)

5. 경과조치

가. 창고시설에 대한 심의 기준(신설)은 이 기준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변경)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변경)

현 행	변 경
1. 필로티형식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가.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나. 전이보의 너비가 전이기둥 폭의 2배를 초과하는 건축물	1. 생략
2. 건축물의 외단열재를 준불연 성능 미만의 단열재로 시공하는 건축물의 화재·피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해당 용도의 부설 주차장의 일부를 법정 주차대수의 30%를 초과하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써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정주차대수의 40%의 범위 내에서 기계식 주차장 등의 설치 적용 여부를 심의(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제2호의 용도(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부분을 포함하며, 제2호 라목의 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1호의 소형 주택은 제외)의 경우는 기계식 주차장 등의 설치를 제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제2호의 용도 외의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라목의 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1호의 소형 주택 다.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분	3. 생략

현 행	변 경
4. 방향전환장치 등 기계장치가 설치된 카리프트 자주식주차장의 이용계획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	4. 생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의 다중주택,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의 다중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가. 실내공간(1.5룸, 2룸 등) 계획에 관한 사항 나. 공동시설의 주거변경 방지 계획에 관한 사항 다. 해당 용도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호실 당 0.5대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5. 생략
	6. (신설) 높이 40m 이상의 창고시설의 건축계획 및 입지에 관한 심의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866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물품사무관리자 등을 정비하여 물품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사무관리자에 대한 정비(안 제2조)

- 본청 물품운용관을 각 담당관 · 관장 · 과장으로 지정하고, 보건소의 각 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

나. 불용 결정에 대한 위임사항을 정비(안 제16조)

- 불용 금액에 대한 위임 사항을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

3.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11월 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별관 2층 재무과
- 전 화 : ☎ (032)560-4161, FAX (032)560-2720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물품사무관리자 등을 정비하여 물품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사무관리자에 대한 정비(안 제2조)

- 본청 물품운용관을 각 담당관·관장·과장으로 지정하고, 보건소의 각 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

나. 불용 결정에 대한 위임사항을 정비(안 제16조)

- 불용 금액에 대한 위임 사항을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1)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별첨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실·과”를 “담당관·단·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단가 5백만원”을 “단가 30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백만원”을 “30백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건소·검단출장소”를 “보건소·검단출장소·동”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보건소장·검단출장소장”을 “보건소장·검단출장소장·동장”으로, 같은 호 중 “5백만원”을 “30백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

<table>
<tr><td colspan="2">건 명:</td><td>담당자</td><td>담 당</td><td>주관
부서장</td><td>국 장</td><td>부구청장</td><td>구청장</td></tr>
<tr><td>부 서</td><td></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정책사업</td><td></td></tr>
<tr><td>단위사업</td><td></td><td rowspan="6">협
조
자</td><td colspan="5" rowspan="6"></td></tr>
<tr><td>세부사업</td><td></td></tr>
<tr><td>편 성 목</td><td></td></tr>
<tr><td>통 계 목</td><td></td></tr>
<tr><td>대 분 류
(산출부기)</td><td></td></tr>
<tr><td colspan="3" rowspan="3">아래와 같이 ┌매 입┐
│ 수 리 │ 코자 합니다.
└제 조┘</td><td colspan="2">물품관리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물품출납원</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분임물품
출납원</td><td colspan="3"></td></tr>
</table>

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용 도

위 물품을 년 월 일 까지 납품 / 수리 / 제조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재 무 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table>
<tr><td rowspan="2">1. 기증자</td><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직 업</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2. 기 증 품</td><td colspan="2">품 목</td><td>단 위</td><td>규 격</td><td>수 량</td><td>금 액</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r>
<tr><td>3. 기 증 목 적</td><td colspan="6"></td></tr>
<tr><td>4. 사 용 용 도</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td><td colspan="3">일 시</td><td colspan="3">장 소</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6. 물품관리상
필 요 사 항</td><td colspan="6"></td></tr>
<tr><td>7. 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td><td colspan="6"></td></tr>
</table>

※ 주 :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상기와 같이 [기증
수령]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 증 자 : 인

수령기관의 장 : 인

[별지 제4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불용결정통보서 . . .

발신 인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	② 품명	③ 품목의 설명	④ 규격 (기계제작번호)	⑤ 단위	⑥ 수량	⑦ 장부가액	⑧ 취득 년월일	⑨ 상태	⑩ 불용결정사유	⑪ 불용결정 년월일	⑫ 회계명	⑬ 물품 소재지	⑭ 보관 관서명	⑮ 처분 의견	⑯ 기타 사항

[별지 제5호서식]

불 용 품 폐 기 (해 체) 조 서

① 관련문서번호						
② 장 소						
③ 일 자						
집 행 자	④ 직위•직급		⑤ 성 명	인		
입 회 자	⑥ 직위•직급		⑦ 성 명	인		
⑧ 정부물품 분류번호	⑨ 품 명	⑩ 단 위	⑪ 규 격	⑫ 수 량	⑬ 금 액	
⑭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 이유						
⑮ 해체할때활용기능 부품명세(난이부족할 때는 별첨)						
⑯ 기 타 사 항						

[별지 제6호서식]

물 품 공 차 증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차 용 기 간	상시보관장소	용 도

위 물품을 공차함.

국 과

전용자 직 성명 인

[물 품 출 납 원 / 분임물품출납원]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신 : ①청 구 번 호 :

발신 : ②출급증빙서번호 :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결재	주관 부서장	인
		분임물품출납원	인

④ 일련번호	⑤ 정부물품 분류번호	⑥ 품명	⑦ 규격	⑧ 단위	⑨ 청구량	⑩ 용도	⑪ 단가	⑫ 취득금액	⑬ 출 급 량	⑭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	물품관리관	㊞
	물품출납원	㊞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	㊞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관	㊞

주 : 2부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 번호 : 물품출급 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　　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　　칙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　　위 : 정부물품 분류표사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 구 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　　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　　가 : 생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 급 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양을 기입한다.

⑭ 비　　고 : 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분임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8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결재		대출 번호	관리 번호	분류 번호	도서명	차수자				대출 기간	독촉 상황	변상 상황	반납 일자	비고
주관 부서장	분임물품 출납원					소속	직명	성명	인					
										부터 까지				

[별지 제9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결 재		연 월 일	적 요	수	급	잔	사용자인
주관 부서장	분임물품출납원						

(주) : (1) 권종별로 계좌를 결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신 : ①반 납 번 호 :

발신 : ②인수증빙서번호 :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	결재	부 서 장	인
		분임물품출납원	인

④ 일련번호	⑤ 정부물품 분류번호	⑥ 품명	⑦ 규격	⑧ 단위	⑨ 반 납 수 량	⑩ 반납사유	⑪ 반납품상태	⑫ 인 수 량	⑬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	물품관리관	㊞
	물품출납원	㊞
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	㊞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관	㊞

반납증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 받을 시 물품수입 시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 칙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단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상태 : 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 량 : 물품관리관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⑬ 비 고 : 장부금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기입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에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

① ( )을 하고자 하는 기관							
②지방자치 단 체 명		③ 소 관 기관명		④ 회계명			
⑤정부물품분류번호	⑥품명	⑦규격	⑧단위	⑨수량	⑩금액	⑪물품의상태	⑫비고
⑬ (관리전환 무상양여)의 조건							
⑭ (관리전환 무상양여)을필요로하는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물품관리관 직 · 성명 ㊞ 물품출납원 직 · 성명 ㊞							
⑮ ( ) 받고자 하는 기관							
⑯지방자치 단 체 명		⑰ 소 관 기관명		⑱ 회계명			
⑲ ( )받은 후		⑳ 물품의 분류					
		㉑ 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장 ㊞ 물품관리관 직 · 성명 ㊞ 물품출납원 직 · 성명 ㊞							

(주) 2부작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

[별지 제13호서식]

물품수입 및 출금원장

① 물품 관리관	② 수입 증빙서 번호	③ 출급 증빙서 번호	④ 년 월 일	⑤ 회계 구분	⑥ 정리 구분	⑦ 적 요	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	⑨ 품 명	⑩ 규 격	⑪ 단 위	⑫ 수 입				⑱ 출 급			㉓ 카드 번호	㉔ 정리 일자	㉕ 담당자 ㊞	㉖ 물품 출납원
											⑬ 단 가	⑭ 수량		⑰ 금 액	⑲ 수량		㉒ 금 액				
												⑮ 신품	⑯ 기타 상태별		⑮ 신품	㉑ 기타 상태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한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②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0001" 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 (예 :대-0001-88, 1988년도 첫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년 월 일 : 생략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 적 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 명: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 단 가 : 생략
㉓ 카드번호 : 해당번호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㉔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㉕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㉖ 물품출납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빙서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정부물품 분류번호 ⑩규격 ⑪단위 ⑫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갑지 전면)

①정부물품 분류번호	②품명	③규격	④단위	⑤회계(계정) 분류	⑥정수	⑦내용연수	⑧물품 출납원㉑	⑨물품 관리관㉑

	⑩ 연월일	⑪ 정리 구분	⑫ 단가	⑬ 수입 (수량/금액)	⑭ 출급 (수량/금액)	⑮ 재고 (수량/금액)	⑯ 운용 (수량/금액)	⑰ 물품 출납원㉑	⑩ 연월일	⑪ 정리 구분	⑫ 단가	⑬ 수입 (수량/금액)	⑭ 출급 (수량/금액)	⑮ 재고 (수량/금액)	⑯ 운용 (수량/금액)	⑰ 물품 출납원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갑지 후면)

	운 용 관 서 별 현 황																
	일련 번호	사 용 부서명	정리 구분 년 월 일	수량 ㊞	정리 구분 년 월 일	누계 ㊞	정리 구분 년 월 일	누계 ㊞	정리 구분 년 월 일	누계 ㊞	정리 구분 년 월 일	누계 ㊞	정리 구분 년 월 일	누계 ㊞	정리 구분 년 월 일	누계 ㊞	이 기 사 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을지 전면)

	운 용 관 서 별 현 황																
	일련 번호	사 용 부서명	정리 구분 년 월 일	수량	정리 구분 년 월 일	누계 ㊞	정리 구분 년 월 일	누계 ㊞	정리 구분 년 월 일	누계 ㊞	정리 구분 년 월 일	누계 ㊞	정리 구분 년 월 일	누계 ㊞	정리 구분 년 월 일	누계 ㊞	이 기 사 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을지 후면)

	운 용 관 서 별 현 황																
	일련 번호	사 용 부서명	정리 구분	수량	정리 구분	누계	정리 구분	누계	정리 구분	누계	정리 구분	누계	정리 구분	누계	정리 구분	누계	이 기 사 항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갑지) 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용연수 : 물품별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원 : 카드 작성 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품관리관 : 카드 작성 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년　월　일 : 생략
⑪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⑫ 단　　가 : 생략
⑬ 수　　입 : 생략
⑭ 출　　금 : 생략
⑮ 재고(수량/금액) : 보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⑯ 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⑰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바인더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재상자 서랍에 보관 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물 품 관 리 카 드 등 록 부

No.

	①등록번호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② 비품	③이력 카드	담당관 인	계 인	등 록 일 자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 명	수 량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 생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 량 : 카드 등록 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 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도 서 대 장

결 재		수입 년월일	관리 번호	부서명	도서명	저자 또는 발행 기관	출판사	출판 년월일	규격	구입처	가격 비고
부서장	분 임 물 품 출납원										

[별지 제19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전면)

품목수량			
납 품 자			
계약금액			
계약체결 년 월 일			
납품기한			
검 수 년 월 일		물 품 출납부 등 기	
검수장소		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 입회자 국과직 성명 ㊞		㊞ 분 임 납 품 출납원 ㊞	

(후면)

품목	규격	단위 칭호	단가	계약 상의 수량	전회 까지의 납품 수량	금회 검수량	미 납 량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물품검사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물품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
물품출납원	직	성명	㊞
입 회 자	직	성명	㊞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인계				사무취급구분	
물품명	수량	금액	인계 연월일	전임자	후임자
					연 월 일까지

위와 같이 보고함.

소속기관(의회·소·동)의 장 직 성명 ㊞

구청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담당 2. ~ 5. (생 략) ② (생 략)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 ---------- ---------- ---------- --------. 1. --- ---------- 담당관·단장·과장 ---------- 담당관·단·과 ----------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 출장소, 의회사무국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 청 재무과장 - 단가 5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2. 의회 의회사무국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보건소·검단출장소 보건소장·검단출장소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불용의 결정) ---------- ---------- ---------- ---------- ----------. 1. --- -------- 단가 30백만원 --- ---------- 2. --- ---------- 30백만원 - ---------- 3. 보건소·검단출장소·동 보건소장·검단출장소장·동장 - - 3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발췌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12. 불용물품 처분

라. 불용 대상 및 결정권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 취득 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

- 불용 금액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전결규정으로 결정할 수 있음

2) 물품관리관

○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 단,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

16. 물품의 검사

가.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나. 검사방법

○ 정기검사

-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

○ 수시검사

-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검사대상 물품 및 원칙

○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된 모든 물품

○ 전자태그 기반 조사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전자태그 미부착 대상물품은 수기 검사 실시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867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주차요금의 다자녀가정 감면 적용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 법령 등 변경사항 반영과 일부 용어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폐지 및「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감면 관련 법령 조항 변경 등 정비 (안 제5조제1항제7호)

나.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으로 개정하고 거주지역 및 연령 기준을 추가하여 정비 (안 제5조제1항제9호)

다. 조례 중 “공용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용어 정비(안 제5조,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주차관리과, 전화 032-560-1962, 팩스 032-560-27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및 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바람)

* 우편 발송 의견 제출처

[주 소]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행정팀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차요금의 다자녀가정 감면 적용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 법령 등 변경사항 반영과 일부 용어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감면 관련 법령 조항 변경 등 정비 (안 제5조제1항제7호)

나.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으로 개정하고 거주지역 및 연령 기준을 추가하여 정비 (안 제5조제1항제9호)

다. 조례 중 “공용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용어 정비(안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도첨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공용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을 부착한 차량

9.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제6조 중 “공용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5. ---------- 공영주차장----------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50 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신설 2006.12.1, 개정 2014.9.29, 2016.7.8, 2017.3.29., 2018.10.2.)	7. ----------. ----------
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

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을 부착한 차량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9.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공용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 --- 공영주차장---------- ---------- ---------- ---------- ---------- ----------.

관계법령 발췌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17. ~ 23. 생략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3.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가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표지

② 제1항 각 호의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표지의 규격, 구체적인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 견 제 출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관·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868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 2020. 06. 09.「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2020. 12. 08.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나. 근거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 방법을 개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을 도모함. (안 제4조)

다.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함. (안 제4조, 제5조, 제7조)

라. 특별회계의 사용 예상 시기에 맞추어 존속기한을 연장함. (안 제5조의2)

마. 세입·세출 범위를 수정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 (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11월 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서구청 제2청사, 10층 자원순환과(심곡동)
- 전 화 : ☎ (032)560-3363, FAX (032)560-2760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20. 06. 09.「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및 2020. 12. 08.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나. 근거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방법을 개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을 도모함. (안 제4조)

다.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함. (안 제4조, 제5조, 제7조)

라. 특별회계의 사용 예상 시기에 맞추어 존속기한을 연장함. (안 제5조의2)

마. 세입·세출 범위를 수정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 (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말한다.

3. “택지등”이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납부금액의 납부방법)”을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영 제4조를 따른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제5조 중 “영 제4조제8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2023년 12년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설치납부금액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원리상환금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용도

3.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를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최대 변동계수”란 연중 일일 폐기물발생량의 평균값에 최대발생량 월의 일일평균값을 나눈 값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말한다. 3. “택지등”이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
<신 설>	<삭 제>
제3조(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기준)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 이라 한다)를 개발하는 자 중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납부대상자”	

라 한다)는 납부금액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가. 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택지등에서 계획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지정폐기물 및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제외한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에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하며, 이 경우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 적용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해당 택지등에 계획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하며, 이 경우 최대 변동계

수는 1.3 이상 적용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가.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이 경우 1톤당 15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이 경우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지면적에 다음 각 목의 부지 매입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함

가. 설치부지가 확정된 경우 소요면적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가 부담

나.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택지등 대지조성원가

다. 부지매입이 진행 중인 경우 매입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 소각시설의 경우 :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가목에 의해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톤당 단가는 구청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르며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가 부담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퇴비화·사료화 시설에 소요되는 톤당 단가는 구청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르며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가 부담	
제4조(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납부대상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①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영 제4조를 따른다.

은 구청장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신 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8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년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2(존속기한) ---------- -------- 2027년 12월 31일----------.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세입) ----------.
1. 제3조에 따른 납부금액	1. 설치납부금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원리상환금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세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4조제7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용도
<신 설>	3.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관계법령 발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2. 3.,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7.]

부 칙 <법률 제17427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를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8.>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전문개정 2009. 6. 16.]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869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 2021. 5. 3. 2021년 제2차 조직개편에 따라 회계관직공무원을 변경 지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 2016. 5. 29. 「지방회계법」 제정 및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등에 따른 회계관직공무원 변경 지정.(안 제2조)

나. 「지방회계법」 제정 및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3.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11월 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서구청 제2청사, 10층 자원순환과(심곡동)
- 전 화 : ☎ (032)560-3363, FAX (032)560-2760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2021. 5. 3. 2021년 제2차 조직개편에 따라 회계관직공무원을 변경 지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 2016. 5. 29.「지방회계법」제정 및「지방재정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등에 따른 회계관직공무원 변경 지정. (안 제2조)

나.「지방회계법」제정 및「지방재정법」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재무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경리담당”을 “자원순환시설담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수도권매립지담당”을 “자원순환시설담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수도권매립지담당”을 “자원순환시설담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 규정”을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①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①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4.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자원순환과장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특별회계 지출원 : 경리담당	7. 특별회계 지출원 : 자원순환시설담당
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수도권매립지담당	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자원순환시설담당
9.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 수도권매립지담당	9.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 자원순환시설담당

②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 규정에 따른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 ----------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1조 삭제 <2016. 5. 29.>

제92조 삭제 <2016. 5. 29.>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8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지속적 증가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재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 필요

3. 주요내용

○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관리위탁,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규정
○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제한에 대한 상세사항 규정
○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공무원 권한 부여사항 규정
○ 사용료, 이용료 등 징수, 감면 목적에 대한 사항 규정
○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도시재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3192, 팩스 032-560-274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기능 및 관리·운영(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사용허가,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지도·감독 등(안 제7조)

마. 사용료 징수 및 면제(안 제 8조)

바. 이용료·수강료 및 이용의 제한(안 제9조 ~ 안 제10조)

사. 운영비 및 시설물 설치(안 제11조 ~ 안 제12조)

아. 자원봉사자(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도첨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협의

라. 기　　타: 물가심의위원회 경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치한 마을거점(커뮤니티)공간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강좌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강생들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사랑방, 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 수행

제4조(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부터 제19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른다.

제5조(사용허가) 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사용자는 매년 운영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구청장이 사용권을 지급함으로써 시설의 사용허가가 된다.

⑤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⑥ 사용자는 사용허가 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

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때
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

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조사·검사·점검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용허가조건에 벗어났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2. 주민의 건강, 안전 및 이익 보장
3.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4.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
3. 구청장이 정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4.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9조(이용료·수강료 등)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 중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④ 이용료 등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평일 야간 및 토요일 등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의 발전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소재한 행정동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료비·교재비를 포함한 이용료 등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⑦ 제6항제3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학교 :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및 각종 학교
2. 기관 :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단체 :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4.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제10조(이용의 제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운영비 등)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 및 사용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관리위탁 계약서 또는 사용허가 승인서에 명시한다.

③ 사용료 면제를 받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복리 및 문화혜택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수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

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발신일자	20 . . .

수신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다음과 같이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을 위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사 용 일 시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장 소		주 소 : (건축물 명칭) :	
		시 설 구 분 : 사 용 면 적 : (예시: ○층 회의실, 다목적실, 전시실, 갤러리, 공유주방 등)	
사 용 목 적			
예 상 인 원			
신청자	단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실무 책임자	성 명	
		연락처	
		F a x	
		E-mail	
		주 소	
비 고			

사용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합니다.

가. 이용자의 불편 및 시설물 안전에 위반되는 행위 및 물품반입을 하지 않음.

나. 시설 사용 후 사용 이전 상태로 유지시키며, 시설물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함.

다. 목적 이외의 영리적 부대행사를 하지 않음.

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행사참여 예상인원을 초과하지 않음.

마. 사용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함.

바. 사용 신청자는 승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함.

사. 사용 조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추후 사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음.

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위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별표 1】

이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표(제9조제2항 관련)

분 야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이용료 (시설 · 장비 이용료)	다목적실, 회의실 등	2시간	20,000원 이하 (1시간 초과 10,000원)	※ 재료비, 교재비 별도
수강료 (프로그램 수강료)	체력단련실, 각종 강좌 등	1개 프로그램 또는 1개월	50,000원 이하	

【별표 2】

이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요율(제9조제3항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비율	비 고
이용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00%	
수강료	- 이용료 감면 대상과 동일	100%	재료비 및 교재비 포함

【별표 3】

이용료 등 반환 기준(제9조4항 관련)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반환사유 발생일</th><th>반환금액</th></tr>
<tr><td colspan="2" rowspan="2">이용료</td><td>이용일 이전 취소</td><td>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td></tr>
<tr><td>이용일 이후
(이용일 포함) 취소</td><td>반환하지 아니함, 단 미도래한 이용예정일에 대하여는 전액 반환</td></tr>
<tr><td rowspan="7">수강료</td><td rowspan="3">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td><td>교습개시 이전</td><td>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td></tr>
<tr><td>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td><td>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td></tr>
<tr><td>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td><td>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td></tr>
<tr><td rowspan="2">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td><td>교습개시 이전</td><td>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td></tr>
<tr><td>교습개시 이후</td><td>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td></tr>
<tr><td colspan="2">비 고</td><td colspan="2">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td></tr>
</table>

관계법령 발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 11.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11.~12. 생략

② 생략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 11. 26.>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8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개정이유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 중복(이중)적인 저소득 선정기준 조문을 정비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와 의료권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3조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국민건강보험법」상 최저보험료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서「국민건강보험법」상 최저보험료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개정 **(안 제3조, 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문구 개정**(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노인복지과, 전화 032-560-4561, 팩스 032-560-27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 중복(이중)적인 저소득 선정기준 조문을 정비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와 의료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국민건강보험법」상 최저보험료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서「국민건강보험법」상 최저보험료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개정 **(안 제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문구 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별도 첨부”

나. 예산조치: 2022년 예산에 반영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 국민건강보험법 · 에 의거”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로, “ · 의료급여법 · 제3조”를 “「의료급여법」 제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층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이하 "공단" 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보험료의 일부 경감에 의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이미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 ---------- ---------- ---------- ---------- ------ 따라 ---------- ---------- ----------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 ---------- 「의료급여법」 제3조---------- ---------- ----.
1.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1.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노인복지법」 제4조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875호

인천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을 반영하여 가족동반 조문을 삭제하고 산업시찰 지원 수단을 다양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범공무원 특혜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제3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 전화 560-4104, 팩스 560-27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을 반영하여 가족동반 조문을 삭제하고 산업시찰 지원 수단을 다양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범공무원 특혜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업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반영: 포상 대상이 아닌 배우자에 대한 지원 문구 삭제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 1회 산업시찰 지원.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특혜) 모범공무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줄 수 있다. 1.·2. (생 략) 3. 연 1회 가족동반 산업시찰	제4조(특혜) ---------- ---------- ---------- -----. 1.·2. (현행과 같음) 3. 연 1회 산업시찰 지원.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879호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2022. 10. 6. 공포(제1964호)됨에 따라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내 행정구역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5조 규정에 의거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2022. 10. 17. ~ 2021. 11. 1.

2. **공고내용**: 지적공부 정리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동명	토지대장·지적도		동명	토지대장·지적도		
	지번수	면적(㎡)		지번수	면적(㎡)	
마전동	170	173,599	당하동	170	173,599	

*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 붙임 참조

3.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4. 알림사항: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작성된 지적공부의 시행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구청 토지정보과(☏032-560-48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에서 당하동으로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읍면동	지 번	지 목	면 적	읍면동	지 번	지 목	면 적
합 계	170필지		173599㎡	170필지			173599㎡
마전동	499-12	도로	837	당하동	1320	도로	837
마전동	515-53	도로	1,753	당하동	1320-1	도로	1,753
마전동	515-54	도로	3,646	당하동	1320-2	도로	3,646
마전동	518-7	도로	3,311	당하동	1320-3	도로	3,311
마전동	520-5	도로	2,479	당하동	1320-4	도로	2,479
마전동	521-1	답	63	당하동	1320-5	답	63
마전동	521-11	도로	34	당하동	1320-6	도로	34
마전동	521-13	도로	30	당하동	1320-7	도로	30
마전동	521-14	답	931	당하동	1320-8	답	931
마전동	521-2	대	645	당하동	1320-9	대	645
마전동	521-21	대	211	당하동	1320-10	대	211
마전동	521-22	도로	117	당하동	1320-11	도로	117
마전동	521-26	답	19	당하동	1320-12	답	19
마전동	521-3	대	652	당하동	1320-13	대	652
마전동	521-4	구거	119	당하동	1320-14	구거	119
마전동	521-5	대	653	당하동	1320-15	대	653
마전동	521-7	대	803	당하동	1320-16	대	803
마전동	521-8	대	1,423	당하동	1320-17	대	1,423
마전동	521-9	대	667	당하동	1320-18	대	667
마전동	522-1	구거	145	당하동	1320-19	구거	145
마전동	522-2	대	596	당하동	1320-20	대	596
마전동	522-3	잡종지	664	당하동	1320-21	잡종지	664
마전동	522-4	답	1,231	당하동	1320-22	답	1,231
마전동	522-5	대	2,215	당하동	1320-23	대	2,215
마전동	523	전	3,253	당하동	1320-24	전	3,253
마전동	524	구거	69	당하동	1320-25	구거	69
마전동	524-1	구거	23	당하동	1320-26	구거	23
마전동	524-11	도로	3	당하동	1320-27	도로	3
마전동	524-14	도로	23	당하동	1320-28	도로	23
마전동	524-15	도로	12	당하동	1320-29	도로	12
마전동	524-16	대	397	당하동	1320-30	대	397
마전동	524-18	도로	11	당하동	1320-31	도로	11
마전동	524-19	도로	12	당하동	1320-32	도로	12
마전동	524-2	구거	17	당하동	1320-33	구거	17
마전동	524-20	도로	12	당하동	1320-34	도로	12
마전동	524-3	대	2,862	당하동	1320-35	대	2,862
마전동	524-5	대	1,891	당하동	1320-36	대	1,891
마전동	524-7	대	775	당하동	1320-37	대	775
마전동	524-9	대	570	당하동	1320-38	대	570
마전동	525-1	전	674	당하동	1320-39	전	674
마전동	525-2	구거	3,467	당하동	1320-40	구거	3,467
마전동	525-3	전	142	당하동	1320-41	전	142
마전동	526	잡종지	2,316	당하동	1320-42	잡종지	2,316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에서 당하동으로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읍면동	지 번	지 목	면 적	읍면동	지 번	지 목	면 적
마전동	526-1	전	383	당하동	1320-43	전	383
마전동	526-2	전	238	당하동	1320-44	전	238
마전동	526-4	답	228	당하동	1320-45	답	228
마전동	526-6	답	2,100	당하동	1320-46	답	2,100
마전동	526-7	도로	384	당하동	1320-47	도로	384
마전동	527	답	3,138	당하동	1320-48	답	3,138
마전동	527-1	전	93	당하동	1320-49	전	93
마전동	529	대	1,422	당하동	1320-50	대	1,422
마전동	529-1	답	1,551	당하동	1320-51	답	1,551
마전동	529-10	임야	42	당하동	1320-52	임야	42
마전동	529-2	답	1,148	당하동	1320-53	답	1,148
마전동	529-4	도로	38	당하동	1320-54	도로	38
마전동	529-6	임야	3,248	당하동	1320-55	임야	3,248
마전동	529-7	임야	3,653	당하동	1320-56	임야	3,653
마전동	529-9	임야	155	당하동	1320-57	임야	155
마전동	530	답	1,193	당하동	1320-58	답	1,193
마전동	530-1	답	533	당하동	1320-59	답	533
마전동	531-1	전	413	당하동	1320-60	전	413
마전동	531	공장용지	3,029	당하동	1320-61	공장용지	3,029
마전동	531-2	도로	78	당하동	1320-62	도로	78
마전동	532	대	681	당하동	1320-63	대	681
마전동	532-1	대	933	당하동	1320-64	대	933
마전동	532-2	대	916	당하동	1320-65	대	916
마전동	532-3	대	108	당하동	1320-66	대	108
마전동	532-4	도로	21	당하동	1320-67	도로	21
마전동	532-5	도로	92	당하동	1320-68	도로	92
마전동	532-6	도로	92	당하동	1320-69	도로	92
마전동	533	전	1,012	당하동	1320-70	전	1,012
마전동	533-1	잡종지	8,244	당하동	1320-71	잡종지	8,244
마전동	534	대	1,058	당하동	1320-72	대	1,058
마전동	534-1	대	1,009	당하동	1320-73	대	1,009
마전동	534-2	대	847	당하동	1320-74	대	847
마전동	534-3	대	171	당하동	1320-75	대	171
마전동	534-4	도로	79	당하동	1320-76	도로	79
마전동	534-5	도로	32	당하동	1320-77	도로	32
마전동	534-7	도로	34	당하동	1320-78	도로	34
마전동	534-8	대	48	당하동	1320-79	대	48
마전동	535-1	공장용지	1,200	당하동	1320-80	공장용지	1,200
마전동	535-3	대	407	당하동	1320-81	대	407
마전동	535-4	대	205	당하동	1320-82	대	205
마전동	535-5	공장용지	300	당하동	1320-83	공장용지	300
마전동	535-6	도로	16	당하동	1320-84	도로	16
마전동	536-1	전	6,764	당하동	1320-85	전	6,764
마전동	536-3	전	2,645	당하동	1320-86	전	2,645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에서 당하동으로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읍면동	지 번	지 목	면 적	읍면동	지 번	지 목	면 적
마전동	536-4	전	154	당하동	1320-87	전	154
마전동	536-5	답	748	당하동	1320-88	답	748
마전동	537	대	8,311	당하동	1320-89	대	8,311
마전동	537-1	전	70	당하동	1320-90	전	70
마전동	538-1	답	62	당하동	1320-91	답	62
마전동	539	대	721	당하동	1320-92	대	721
마전동	540	대	1,050	당하동	1320-93	대	1,050
마전동	540-1	전	340	당하동	1320-94	전	340
마전동	540-10	도로	45	당하동	1320-95	도로	45
마전동	540-11	대	133	당하동	1320-96	대	133
마전동	540-2	대	2,568	당하동	1320-97	대	2,568
마전동	540-3	구거	46	당하동	1320-98	구거	46
마전동	540-4	구거	10	당하동	1320-99	구거	10
마전동	540-5	구거	43	당하동	1320-100	구거	43
마전동	540-6	대	95	당하동	1320-101	대	95
마전동	540-7	도로	14	당하동	1320-102	도로	14
마전동	540-9	도로	33	당하동	1320-103	도로	33
마전동	541	답	1,594	당하동	1320-104	답	1,594
마전동	542	답	530	당하동	1320-105	답	530
마전동	543	대	278	당하동	1320-106	대	278
마전동	543-1	전	701	당하동	1320-107	전	701
마전동	544	대	426	당하동	1320-108	대	426
마전동	544-1	대	720	당하동	1320-109	대	720
마전동	544-2	전	122	당하동	1320-110	전	122
마전동	544-3	도로	27	당하동	1320-111	도로	27
마전동	545-1	대	596	당하동	1320-112	대	596
마전동	545-10	공장용지	4,975	당하동	1320-113	공장용지	4,975
마전동	545-11	임야	261	당하동	1320-114	임야	261
마전동	545-12	대	101	당하동	1320-115	대	101
마전동	545-13	공장용지	500	당하동	1320-116	공장용지	500
마전동	545-15	도로	40	당하동	1320-117	도로	40
마전동	545-16	대	493	당하동	1320-118	대	493
마전동	545-17	공장용지	524	당하동	1320-119	공장용지	524
마전동	545-2	전	290	당하동	1320-120	전	290
마전동	545-27	도로	63	당하동	1320-121	도로	63
마전동	545-28	대	641	당하동	1320-122	대	641
마전동	545-29	임야	153	당하동	1320-123	임야	153
마전동	545-3	대	234	당하동	1320-124	대	234
마전동	545-4	대	589	당하동	1320-125	대	589
마전동	545-6	대	522	당하동	1320-126	대	522
마전동	545-7	전	185	당하동	1320-127	전	185
마전동	545-8	공장용지	876	당하동	1320-128	공장용지	876
마전동	545-9	공장용지	9,154	당하동	1320-129	공장용지	9,154
마전동	546-1	전	199	당하동	1320-130	전	199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에서 당하동으로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읍면동	지 번	지 목	면 적	읍면동	지 번	지 목	면 적
마전동	546-2	대	397	당하동	1320-131	대	397
마전동	546-5	잡종지	391	당하동	1320-132	잡종지	391
마전동	546-6	도로	35	당하동	1320-133	도로	35
마전동	710	구거	5,121	당하동	1320-134	구거	5,121
마전동	710-2	도로	261	당하동	1320-135	도로	261
마전동	710-3	구거	47	당하동	1320-136	구거	47
마전동	710-5	도로	280	당하동	1320-137	도로	280
마전동	711	도로	53	당하동	1320-138	도로	53
마전동	712	도로	476	당하동	1320-139	도로	476
마전동	산180-10	도로	2,571	당하동	산235	도로	2,571
마전동	산181-1	임야	1,636	당하동	산235-1	임야	1,636
마전동	산181-14	임야	724	당하동	산235-2	임야	724
마전동	산181-17	도로	1,749	당하동	산235-3	도로	1,749
마전동	산185-12	도로	87	당하동	산235-4	도로	87
마전동	산194-10	도로	51	당하동	산235-5	도로	51
마전동	산196-5	임야	14	당하동	산235-6	임야	14
마전동	산196-15	구거	893	당하동	산235-7	구거	893
마전동	산196-17	임야	1,521	당하동	산235-8	임야	1,521
마전동	산196-20	임야	2,071	당하동	산235-9	임야	2,071
마전동	산196-23	도로	535	당하동	산235-10	도로	535
마전동	산197-1	임야	612	당하동	산235-11	임야	612
마전동	산197-6	구거	397	당하동	산235-12	구거	397
마전동	산197-7	임야	328	당하동	산235-13	임야	328
마전동	산197-8	임야	113	당하동	산235-14	임야	113
마전동	산197-9	임야	906	당하동	산235-15	임야	906
마전동	산198	임야	1,139	당하동	산235-16	임야	1,139
마전동	산199-1	임야	192	당하동	산235-17	임야	192
마전동	산199-3	임야	955	당하동	산235-18	임야	955
마전동	산199-5	임야	82	당하동	산235-19	임야	82
마전동	산199-6	임야	865	당하동	산235-20	임야	865
마전동	산199-9	임야	174	당하동	산235-21	임야	174
마전동	산200	임야	195	당하동	산235-22	임야	195
마전동	산203-1	임야	9,026	당하동	산235-23	임야	9,026
마전동	산203-3	임야	99	당하동	산235-24	임야	99
마전동	산203-4	구거	2,281	당하동	산235-25	구거	2,281
마전동	산203-5	임야	298	당하동	산235-26	임야	298
마전동	산204-1	임야	5,587	당하동	산235-27	임야	5,587
마전동	산204-2	구거	793	당하동	산235-28	구거	793
마전동	산204-4	임야	1,653	당하동	산235-29	임야	1,65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880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가축사육 제한구역 명확화로 법체계의 통일성과 안전성 도모하고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요소 제거하여 생활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거밀집지역의 구체적 명시

○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생태하천과장)에게 2022. 11. 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3053, FAX 032-560-272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가축사육 제한구역 명확화로 법체계의 통일성과 안전성 도모하고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요소 제거하여 생활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밀집지역의 구체적 명시(안 제2조)

나.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조항 정비(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도 첨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5.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의 대지경계 또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을 말한다.
6.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 2마리와 자축 3마리”를 “부업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5마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기존 가축 사육자에 한정하며, 가축 사육자”를 “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 지역의 가축 사육자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를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축 사육지 및 제한지역의”를 “가축”으로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최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까지 직선거리로서 1,200m 이내 지역
2. 「수도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신 설>	5.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의 대지경계 또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을 말한다.
<신 설>	6.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최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부지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까지 직선거리로서 1,200m 이내 지역 2. 「수도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②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 2마리와 자축 3마리 이하의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	4. ---------- 부업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5마리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③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기존 가축 사육자에 한정하며, 가축사육자는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 지역의 가축 사육자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 ---------- ------ 노력---------- ---------.
④ 일부 기존 가축 사육지 및 제한지역의 사육지 주변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하는 것이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 가축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

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3. ~29. 생략

의 견 제 출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882호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469-9 일원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가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에 따라 종전토지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3.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 내역**(붙임 참조)

토지소재		종전토지(폐쇄)		확정토지(작성)		비 고
구	동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서구	오류동	2	1,651	**1**	**110,428**	증 108,777㎡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번별조서 참조

4. **공고기간:** 2022. 10. 17. ~ 2022. 11. 1.
5.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6.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032-560-482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번별 조서(종전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합 계	**11필지**			**1,651.0**	
1	오류동	1469-9	도로	222.00	
2	오류동	1469-17	공장용지	1,429.00	

지번별 조서(확정 토지)

연 번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합 계		**4필지**		**110,428**	
1	오류동	1541	도로	110428	